

■ 수도법 시행령 [별표 2의4] <신설 2021. 3. 30.>

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(제34조의4제2항 관련)

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리를 한 날부터 3년간 기록·보존(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)해야 한다.

1. 상수도관망의 세척
 - 가. 세척일시 및 위치
 - 나. 세척구간의 관 제원(諸元)
 - 다. 세척방법 및 세척에 소요된 수량(水量)
 - 라. 세척 이후의 관 상태 및 세척 단계별 수질 측정값 등 세척 결과
 - 마. 세척 배출수의 처리방법 및 결과
2.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·복구 등 누수관리
 - 가. 누수탐사 일시 및 원인
 - 나. 누수발생구간의 관 제원
 - 다. 누수탐사 수행 내용
 - 라. 누수복구의 방법 및 복구 결과
3.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·정비
 - 가. 점검·정비 대상 및 일시
 - 나. 점검·정비 내용 및 방법
 - 다. 점검·정비 결과